

뉴욕주  
WORKERS' COMPENSATION BOARD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및/또는 정화 작업 참여 등록**  
(산재보험법 § 162에 따른 선서진술서)

3페이지의 선서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배경과 지침을 완전히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배경**

1. "자격 조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향후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및/또는 정화 작업 "참여자"가 상실 임금 및 의료 혜택에 대한 산재보상을 청구할 시간을 연장하고, 시기 부적절을 이유로 이전에 거부된 청구를 다시 재개하도록 Board에게 허용하는 산재보험법(Workers' Compensation Law, WCL) 8-A조가 2006년 8월 1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8-A조는 "자격 조건"의 정의를 변경하고 등록 마감일을 연장하기 위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2.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또는 정화 작업 참여자"(참여자"로 지칭함)는 WCL § 161(1)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a) Board에서 만족할 만한 증거를 Board에 제시한 고용 과정 중의 **직원** 또는 (b) 의용대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i) 2001년 9월 11일부터 2002년 9월 12일 사이에 세계무역센터 현장에서 구조, 복구 또는 정화 작업에 참여함, 또는
    - (ii) 2001년 9월 11일부터 2002년 9월 12일 사이에 뉴욕시의 Fresh Kills 매립지에서 근무함, 또는
    - (iii) 2001년 9월 11일부터 2002년 9월 12일 사이에 뉴욕시 시체 보관소 또는 맨해튼 서쪽 부두의 임시 시체 보관소에서 근무함, 또는
    - (iv) 2001년 9월 11일부터 2002년 9월 12일 사이에 맨해튼 서쪽과 뉴욕시 Fresh Kills 매립지 사이 바지선에서 근무함
3. "세계무역센터 현장"은 "Hudson River와 Canal Street에서 동쪽으로 Canal Street에서 Pike Street까지, 남쪽으로 Pike Street에서 East River까지, 그리고 맨해튼의 하단까지 이어지는 선의 아래에 위치한 모든 곳"을 말합니다.
4. "자격 조건"은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또는 정화 작업에 참여하는 동안 위험한 노출로 인해 발생한 다음과 같은 질병이나 상태로 정의됩니다.
  - (a) 결막염, 비염, 부비동염, 인두염, 후두염, 성대 질환, 상기도 과민성, 기관기관지염 또는 그러한 질환의 조합을 포함한 상기도 및 점막의 질병
  - (b) 기관지염, 천식, 반응성 기도 기능 장애 증후군, 그리고 과민성, 육아종성 또는 호산구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폐렴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기도 질병
  - (c) 급성 또는 만성적인 노출로 인해 발생하거나, 노출로 인해 악화된 식도염 및 위식도 역류 질환을 포함한 위식도 질병
  - (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증 또는 이러한 질환의 조합을 포함한 심리학적 축 질병
  - (e) 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석면 관련 질병, 중금속 중독, 근골격계 질병, 만성 정신병을 포함하여 노출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새로운 발병
5.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또는 정화 작업 참여자의 청구가 상해보험법 8-A조의 적용을 받으려면, Workers' Compensation Board("Board")에 참여자가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 양식(WTC-12)은 2026년 9월 11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정확하고 진실되게 선서진술서를 작성하여, 2026년 9월 11일까지 원본을 Board 지구 사무소 또는 Downstate 중앙 우편 센터(주소 아래 참조)에 제출하시면 등록됩니다.

**지침**

- A.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고통을 겪고 있거나, 산재보상 혜택에 대한 청구를 제출했거나, 가능한 "자격 조건"으로 인해 향후 고통을 겪게 될 경우, 위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또는 정화 작업 참여자는 동봉된 선서진술서에 Board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B.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 선서진술서를 작성하세요.

**항목 1** - 아파트 번호(해당하는 경우), 거리 번호, 거리명, 도시, 주 및 우편번호를 포함한 현재 거주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제공된 거주지 주소와 다를 경우, 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 전화번호를 꼭 포함하세요. 사회보장번호(SSN) 및 생년월일을 월/일/년 순서로 제공하세요.

**항목 2** - 이 문장은 2001년 9월 11일부터 2002년 9월 12일 사이에 세계무역센터 현장, Fresh Kills 매립지, 뉴욕시 시체 보관소 또는 임시 시체 보관소, 또는 맨해튼 서부와 Fresh Kills 매립지 사이의 바지선에서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또는 정화 작업에 참여했음을 진술합니다.

**항목 3** - 직원(유급 고용 과정 중)으로서 또는 의용대원(고용 과정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인)으로서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및/또는 정화 작업에 참여했음을 진술합니다.

**항목 4** - 배지, 서신, 진술서, 사진, 숙박시설 등 의용대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간략한 설명과 함께 기재합니다.

**항목 5** - 표를 작성합니다. 최대한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및/또는 정화 작업에 참여한 날짜와 장소를 명시합니다. 참여한 날짜에 각 장소에서 수행한 작업을 설명합니다.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및/또는 정화 작업에 참여하는 동안의 고용주 또는 의용 활동을 한 구조단체/의용기관의 완전한 이름 및 주소, 그리고 해당하고 알고 있는 경우, 고용주의 보험회사 이름, 그리고

**항목 6** -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및/또는 정화 작업에 참여한 것과 관련하여 이전에 Board에 산재보상 청구를 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청구를 한 경우, 청구를 제출한 날짜와 WCB 케이스 번호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항목 7** - 이 항목은 선서진술서를 작성하여 "참여자"로서 등록하는 것이 산재보상 혜택에 대한 청구를 제출하는 것과 같지 않음을 이해한다고 명시합니다. 혜택에 대해 청구를 제출하려면, 양식 C-3 또는 양식 WTCVol-3을 적시에 Board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항목 8** - 이 항목은 허위의 서면 문서를 Board에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음을 이해한다고 명시합니다.

C. 선서진술서를 작성한 후, 진실되고 정확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D. 공증인 앞에서 선서진술서에 서명하세요. 진술서에 서명 시 선서진술서상 서명을 공증받거나, 또는 위치한 관할 지역의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인이 입회한 경우에만 선서진술서에 서명하세요. 유의사항: 이 진술서에 서명함으로써,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제공된 정보와 진술이 사실임을 선서하고 확인합니다. 또한 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과 허위 문서를 제출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고 명시합니다.

E. 2026년 9월 11일까지 원본 선서진술서를 Board의 중앙 우편 주소(P.O. Box 5205, Binghamton, N.Y. 13902)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가 정보

F. Board에 이 선서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산재보상 혜택을 위한 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 혜택을 위한 청구를 제출하려면, 양식 C-3(직원의 보상 청구, Employee's Claim for Compensation) 또는 WTCVol-3(세계무역센터 의용대원의 보상 청구, World Trade Center Volunteer's Claim for Compensation)을 적시에 Board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G. **유의사항:**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및/또는 정화 작업에 참여한 것과 관련하여 이전에 산재보상 혜택에 대해 청구를 제출했지만, 고용주에게 적시에 통지하지 못했거나 허용된 기간 내에 Board에 청구를 제출하지 않아서 거부된 경우, 선서진술서가 2026년 9월 11일까지 Board에 제출되면 Board는 해당 청구를 재개하고 재검토할 것입니다.

H. **유의사항:**

- 연장된 청구 제출 기간이 청구에 적용되려면 "참여자"가 2026년 9월 11일까지 Board에 선서진술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 "참여자"가 "자격 조건"에 대한 산재보상 혜택을 위해 청구를 이미 제출했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여 거부되었고, 이제 적시에 선서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Board는 "참여자"의 청구를 재개하거나 재검토하지 않습니다. 2012년 9월 11일부터 2021년 9월 11일 사이에 장애가 발생한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및/또는 정화 작업 참여자의 청구가 2026년 9월 11일 혹은 그 이전에 제출된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어 이 장의 18절 또는 28절에 의해 금지된 것으로 거부되지 않습니다. 2012년 9월 11일부터 2021년 9월 11일 사이에 장애가 발생한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및/또는 정화 작업 참여자의 청구가 이 장의 18절 또는 28절에 의해 거부된 경우, Board는 해당 청구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 연장된 청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1일까지 Board에 선서진술서를 제출하여 등록한 "참여자"의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및/또는 정화 작업 참여 등록  
(산재보험법 § 162에 따른 선서진술서)

등록은 산재보상 혜택에 대한 청구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자

, 참여자

(귀하의 이름, 중간 이니셜 및 성)

선서진술서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및/또는 정화 작업 참여  
관련.

WCL§162

\*\*\*\*\*

주)

(이 문서를 공증받은 주)

) ss

카운티

(이 문서를 공증받은 카운티, 또는 미국 이외인 경우 국가)

**본인은, \_\_\_\_\_ (이름, 중간 이니셜 및 성을 기입)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선서하고, 증언하고 진술합니다.**

1. 본인은 상기의 참여자이며, \_\_\_\_\_에 거주합니다(거리 번호와 거리명, 도시, 주,  
우편번호 및 미국이 아닌 경우 국가를 기재하세요). 본인의 우편 주소(거주지 주소와 다른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는 \_\_\_\_\_입니다(지역번호, 번호). 본인의 사회보장번호(SSN)는  
\_\_\_\_\_입니다(선택사항) 그리고 본인의 생년월일은 \_\_\_\_\_입니다.

2. 본인은 산재보험법 § 161 (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및/또는 정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완전한 정의에 대해서는 지침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3. 본인은 산재보험법 § 161 (1)에 정의된 바와 같이 \_\_\_\_\_로서(**직원** 또는  
**의용대원**으로서 참여했는지 명시하세요)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및/또는 정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고용  
중이었고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직원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고용 상태가 아니었고, 고용주가 참여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수행한 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용대원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4. 본인은 **의용대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_\_\_\_\_  
(사진, 배지, 서신 등 의용대원 활동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적으세요. (의용대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이 단락에 X표를 하세요.)

5. 본인이 참여한 날짜와 작업 장소, 수행한 작업에 대한 설명, 참여한 기간 동안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또는  
의용대원 참여를 지시한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그리고 고용주의 보험사(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한 날짜	참여한 장소	수행한 작업 설명	고용주/구조단체 또는 기관의 이름	고용주/구조단체 또는 기관의 주소	고용주 보험회사의 이름(알고 있는 경우)

6. 본인은 산재보험법 § 162 (1)에 정의된 세계무역센터 구조, 복구 및/또는 정화 작업 참여와 관련하여 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청구를 \_\_\_\_\_ (제출했음 또는 제출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세요). 본인은 \_\_\_\_\_ (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청구를 제출한 날짜)에 청구를 제출했으며 제출된 청구에 대한 "WCB 케이스 번호"는 \_\_\_\_\_ (Workers' Compensation Board가 부여된 8자리 수)입니다.
7. 본인은 Board에 이 선서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혜택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며 Board가 케이스 파일을 만들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청구를 접수하려면 양식 C-3, 직원의 보상 청구(Employee's Claim for Compensation), 또는 양식 WTCVol-3, 세계무역센터 의용대원의 보상 청구(World Trade Center Volunteer's Claim for Compensation)를 적시에 Board에 제출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8. 본인은 Board와 같은 공공 기관에 제출한 서면 문서에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여기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사실임을 아래에 서명하여 선서하고 확인합니다.

---

#### 완전한 서명

(잉크만 사용 -- 가능하면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세요)

본인의 입회하에 \_\_\_\_\_ 일  
\_\_\_\_\_,  
20\_\_\_\_\_년에 선서함

\_\_\_\_\_  
공증인